

제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159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완석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10. 6.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19가단6178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4. 24. 접수 제43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가.항 1행의 “D조합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C이 연대보증한 D조합의 V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다.항 1행 “L”를 “E”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C은 2015년경 통영시 R 전 23㎡, 통영시 S 38㎡, 통영시 T 도로 2㎡, 제주시 M 임야 964㎡ 중 20/964지분, 제주시 N 임야 876㎡ 중 1/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의 2015년경 공시지가 합계는 약 2,252,090원1) 이다.』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인정근거] 1행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나.항 및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C의 사해의사 유무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0, 11, 13, 15, 1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이 V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1998. 11. 14.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긴 하였으나, D조합으로부터 V과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1. 4. V과 C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한 점,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 1. 15. 창원지방법원 2007가소3510호로 C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6.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이 2007. 1. 22. C에게 송달된 점,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5카단46호로 C 소유의 통영시 R 전 23㎡, 통영시 S 전 38㎡, 통영시 T 도로 2㎡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2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C은 위 가압류 결정을 2005. 2. 15.에 송달받은 점, ④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리인으로서 2012. 9. 28. C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 또는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C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 ②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목록 제4, 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로 협의한 E의 상속인들은 C뿐만 아니라 F, G, H, I, J, K가 있었다.
- ③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법정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C의 상속지분 포기는 특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히려,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하였더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의 안전한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 ④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에 위 상속인들 중 남자 형제들인 C, 피고, K가 가족묘가 포함된 상속재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2021. 2. 25. 매각되기도 하였다(제주지방법원 W).
- ⑤ 피고는 C의 동생이긴 하나 C이 제주도를 떠난 1984. 5.경부터 장기간 밀접한 왕래나 연락 없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C이 제주도를 떠나 통영 등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1998. 11. 14. D조합에 대한 V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 ⑥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목록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상속재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E의 처인 F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약에 동의한 것인데, 이는 상속재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E와 F의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설명하는 경위와 같이 ‘장남인 C이 오랜 기간 제주도를 떠나 거제도 등 타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차남인 피고가 집안의 대소사(제사, 별초, 부모봉양 등)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하여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갖는 것으로 말하여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협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⑦ 또한 C 역시 가족묘가 포함된 상속재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지분을 취득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약은 상속인들 중 한 명인 C의 채권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양순, 판사 이범휘

1) 174,570원[= 통영시 R 전 23㎡ × 2015. 1. 1. 개별공시지가(원/㎡) 7,590원] + 311,600원[=

통영시 S 전 $38\text{m}^2 \times 2015. 1. 1. \text{개별공시지가(원/}\text{m}^2\text{)} 8,200\text{원}] + 113,200\text{원} [= \text{제주시 M 임야}$
 $964\text{m}^2 \text{ 중 } 20/964\text{지분} \times 2015. 1. 1. \text{개별공시지가(원/}\text{m}^2\text{)} 5,660\text{원}] + 1,652,720\text{원} [= \text{제주시 N}$
 $\text{임야 } 876\text{m}^2 \text{ 중 } 1/3\text{지분} \times 2015. 1. 1. \text{개별공시지가(원/}\text{m}^2\text{)} 5,660\text{원}]$.

통영시 T 도로 2m^2 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바, 인접한 S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5.
1. 1. 개별공시지가(원/㎡) 8,200원]를 적용하면 16,400원으로 산정된다.